

 <p>거창군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공 보</h1> <p>제831호 2021. 11. 17(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훈 령

제452호 거창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2

고 시

제2021-160호 도로명주소 고시 7

공 고

제2021-1602호 거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9

제2021-1608호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8

제2021-1610호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23

제2021-1611호 보 상 계 획 공 고(안) 25

회 램										
------------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창군수

서명생략

2021년 11월 17일

거창군 훈령 제452호

거창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거창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거창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49조”를 “「거창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공고기간에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나,”를 “공고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하며,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거창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를 “「거창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채용 구비서류)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통
2. 주민등록 등본·초본 각 1통
3. 자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정함)

4. 그 밖에 채용신체검사서 등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다만, 채용신체검사로 발생하는 비용은 사용부서의 장이 부담하고, 직무상 특정 신체적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할 경우 채용신체검사를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26조 중 “「거창군 공무원근로자 관리규정」 제71조 및 제72조”를 “「거창군 공무원근로자 관리규정」 제69조 및 제70조”로 한다.

제27조 중 “「거창군 공무원근로자 관리규정」 제73조부터 제82조”를 “「거창군 공무원근로자 관리규정」 제71조부터 제75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6조(사용원칙) ①·② (생략) ③ 사용부서의 장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초 근로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u>거창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u>」 제49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7조(채용절차) ①~② (생략) ③ <u>공고기간에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나, 공고 이후의 토요일 또는 휴일은 공고기간에 산입한다.</u> ④ (생략) ⑤ 사용부서의 장은 채용 예정자에 대하여 「<u>거창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u>」 제8조의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다.</p> <p>제8조(채용 구비서류) 관리부서의 장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필요시) 3. 최종학력증명서 1통(필요시) 4. 자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정함) 5. 그 밖에 채용신체검사서 등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p>	<p>제6조(사용원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부서의 장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초 근로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u>거창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u>」 제23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7조(채용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공고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하며,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공고 이후의 토요일 또는 휴일은 공고기간에 산입한다.</u> ④ (현행과 같음) ⑤ 사용부서의 장은 채용 예정자에 대하여 「<u>거창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u>」 제11조의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다.</p> <p>제8조(채용 구비서류)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통 2. 주민등록 등본·초본 각 1통 3. 자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정함) 4. 그 밖에 채용신체검사서 등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다만, 채용신체검사로 발생하는 비용은 사용부서의 장이 부담하고, 직무상 특정 신체적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할 경우 채용신체검사를 「<u>건강검진기본법</u>」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p>

제13조(유급휴일) ①~③ (생략)
<신설>

제14조(무급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제26조(교육훈련 등)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교육훈련과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공무원근로자 관리 규정」 제71조 및 제72조를 준용한다.

제27조(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공무원근로자 관리규정」 제73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유급휴일) ①~③ (현행과 같음)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삭제>

제26조(교육훈련 등)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교육훈련과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공무원근로자 관리 규정」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제27조(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공무원근로자 관리규정」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거창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계획

1. 개정이유

- 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제도개선
- 나.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반영 등

2.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 1) 채용 신체검사 비용 사용자 부담 및 국가건강검진 결과 활용(안 제8조)

나.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3조)

-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무급휴일에 유급휴일로 변경

다. 현행 규정 보완(안 제7조·제26조·제27조)

- 1) 공개채용 시 공고기간 명시
- 2) 「거창군 공무원근로자 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1. 17.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하수내길 142-79 등 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조서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이동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산116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하수내길 142-79	20211117	20090401	마을 결의 넷물이 마을을 안고 있는 듯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444-2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260-6	20211117	20091228	1994년 거창읍 시가지 간선도로명 결정에서 유래	건물번호 부여	
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596-1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2길 122-9	20211117	20090401	장팔길의 시작점으로 부터 분기되는 두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4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352-1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새마1길 168-94	20211117	20091228	새마라는 옛지명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5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479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성북1길 211	20211117	20090401	성 재 북쪽에 자리하게 되어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6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838, 792-6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송계로 865-33	20211117	20091228	송계사를 지나 고제면으로 가는 길임을 반영한 도로	건물번호 부여	
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112-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3길 34	20211117	20160420	송정이란 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83-1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밤티재로 1288-20	20211117	20091228	밤티재라는 지명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거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20조(2022. 1. 13. 시행)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목적과 군수의 책무(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의견제출 제외 대상(안 제3조)
- 다. 의견제출 방법 등(안 제4조)
- 라. 의견서의 보완요구(안 제5조)
- 마. 의견의 검토 및 처리(안 제6조)
- 바. 의견의 반영과 차별대우의 금지 등(안 제7조 및 제8조)
- 사. 비밀 준수 의무 등(안 제9조)

3. 제정 조례·규칙안: 붙임 1, 2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거창군(기획예산담당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 소: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다. 우편번호: 51032, 전화/팩스 : 055-940-3073/3029

이메일: sun815@korea.kr

라.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5. 입법예고문 게재: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거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4조(의견제출 방법 등)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5조(의견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의견의 검토 및 처리) ① 규칙의 주관부서(해당 규칙을 제정·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에 대하여 법제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③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검토결과서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송에 든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7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했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

(앞쪽)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성명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 표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해당 [] 해당되지 않음	대표자 인원: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거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용

(뒤쪽)

※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수집 · 이용목적	의견제출 검토
보유기간	5년
수집 · 이용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의견제출 검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80g/㎡]

[별지 제2호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검토결과서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제출일자
제출의견	
주관부서 및 검토자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규칙명	(현행 규칙이 있을 경우 기재)
관련 법령 및 조례	
검토의견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수용여부/사유 등 작성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거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수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계획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계획조례」
2. 개정이유 : 사업주 권익보호와 신뢰보호원칙 및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4.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도시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도시건축과)
 - 전화 : 055-940-3583, 팩스 : 055-940-3579, 이메일: chansik@korea.kr

붙 임 「거창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례명 : 거창군계획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2679호 거창군 계획 조례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3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부칙(조례 제2679호 개정 2021.9.29.)</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부칙(조례 제2679호 개정 2021.9.29.)</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3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거창군 공고 제2021-1610호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차량 방지를 위하여 불법주정차단속 CCTV를 설치·운영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15일

거창군수

1. 행정예고 내용

- 설치목적 :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을 통한 불법주정차 근절 및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구성에 기여
- 사업명 :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단속 CCTV 구매설치
- 설치규모 :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 2식
- 설치위치
 - 아림초등학교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6길 12)
 - 창동초등학교 (거창군 거창읍 동동1길 42)
- 주관부서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교통담당 ☎055-940-3384)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3. 공고방법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1년 11월 15일 ~ 2021년 12월 06일(21일간)

5. 의견제출

- 기재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E-mail 등
- 제출기관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교통담당)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 전화 : 055-940-3384
 - FAX : 055-940-3349
 - E-mail : tjdg1220@korea.kr

보 상 계 획 공 고(안)

거창읍 정장리 일원에 시행 예정인 「정장 농공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합니다.

2021. 11. 17.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정장 농공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나. 위치 :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일원

다. 사업량 : 도시계획도로 개설 L=263.0m, B=8.0m

2.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3. 보상시기 : 별도 보상통보

4.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산정하여 현금 지급한다.

(감정평가 업자선정 : 사업시행자가 2인 선정, 토지소유자 추천시 별도 1인선정)

5. 보상절차

가) 토지 : 보상협의 성립시 소유권 이전등기 관계서류 징구 후 보상

나) 지장물 : 철거후 보상금 전액 지급

6. 보상계획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보상계획 열람장소 : 거창군청 경제산업국 도시건축과 ☎940-3593)

8. 이의신청 : 열람장소에서 서면 제출

【별첨 1】 토지조서(사업시행에 따른 편입 면적이 달라질 수 있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현실	공부	대장	편입 면적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계		19필지			24,329	2,654		8명			
1	거창읍 정장리	190-4	도	도	3,669	63	-	경상남도			
2	"	190-2	창	창	722	9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 27, 1103호(한성시티빌)	이수길	서울시 중구	주식회사 신한은행	근저당, 지상권
3	"	231	대	대	1,150	140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146, 802호(티시티)	한경수	서울시 영등포구	주식회사 국민은행	근저당
4	"	190-1	대	대	278	56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68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146, 802호(티시티)	합자회사 정개발 (50/278) 한경수 (228/278)	서울시 중구	주식회사 신한은행	근저당, 지상권
5	"	1138- 23	도	도	422	15	-	국 (건설부)			
6	"	189	창	창	306	41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146, 802호(티시티)	한경수	서울시 영등포구	주식회사 국민은행	근저당
7	"	189-1	창	창	111	67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146, 802호(티시티)	한경수	서울시 영등포구	주식회사 국민은행	근저당
8	"	160	전	전	581	4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 27, 1103호(한성시티빌)	이수길			
9	"	184-3	창	창	1,673	78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146, 802호(티시티)	한경수	서울시 영등포구	주식회사 국민은행	근저당
10	"	188-2	전	전	337	337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68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146, 802호(티시티)	합자회사 정개발 (189/962) 한경수 (773/962)	서울시 중구	주식회사 신한은행	지상권
11	"	184	창	창	3,450	546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146, 802호(티시티)	한경수	서울시 영등포구	주식회사 국민은행	근저당
12	"	83	장	장	5,004	146	경남 양산시 어곡공단5길 20	한국철강 산업	경남 양산시	중소기업 은행	근저당
13	"	184-1	전	전	1,630	182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146, 802호(티시티)	한경수	서울시 영등포구	주식회사 국민은행	근저당, 지상권
14	"	164-1	장	장	544	27	경남 양산시 어곡공단5길 20	한국철강 산업	경남 양산시	중소기업 은행	근저당, 지상권
15	"	184-4	전	전	390	47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6길 59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4길 146, 802호(티시티)	김효성 (1/2) 한경수 (1/2)	서울시 영등포구	주식회사 국민은행	근저당
16	"	71-6	장	장	217	23	경남 양산시 어곡공단5길 20	한국철강 산업	경남 양산시	중소기업 은행	근저당, 지상권
17	"	71-12	전	전	583	474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452-52	황숙성	서울시 중구	주식회사 신한은행	근저당
18	"	71-9	대	대	3,226	395	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83-8	아림농산 영농조합			
19	"	71-10	전	전	36	4	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83-8	아림농산 영농조합			